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83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오세희·서영교·채현일

박지원 • 김동아 • 이병진

전진숙 • 전현희 • 강준현

허성무 · 김문수 · 문금주

이광희 · 송재봉 · 신정훈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는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 역을 지정하도록 하고,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, 편의시설 설치, 이용수 칙 고지, 이용료 징수, 차량·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

그런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,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고,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도 없음.

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 도록 하고,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특별관리지역 지정·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·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3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3제4항 본문 중 "주민의"를 "주민과 소상공인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해당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·보급하여 이를 특별관리지역의 지정·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관리지역의 지정·변경 또는 해제 시 의견 청취에 관한 적 용례)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관리지역 을 지정·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적용례) 제48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제적 손실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	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
화) ① ~ ③ (생 략)	화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	4
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	
•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미리 <u>주민의</u> 의견을 들어야 하	- <u>주민과 소상공인 등의</u>
며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	
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	
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	l
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	
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
	,
⑤ ~ ⑨ (생 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⑩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
	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
	따라 제6항에 따른 조치로 인
	하여 해당 특별관리지역 내 소
	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
	실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등
	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
	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

	는 지표를 개발・보급하여 이
	를 특별관리지역의 지정·운영
	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
	<u>한다.</u>
<u>⑩</u> (생 략)	<u>⑩</u> (현행 제10항과 같음)